

가

분류	급여비용(원)
60분이상	22,310
90분이상	29,920
120분이상	37,780
150분이상	42,930
180분이상	47,460
210분이상	51,630
240분이상	55,490

3) 방문목욕 급여비용(방문당)

분류	급여비용(원)
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	74,470
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	67,150
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1,930

4) 방문간호 급여비용(방문당)

분류	급여비용(원)
30분미만	36,110
30분이상~60분미만	45,290
60분이상	54,490

5) 주·야간보호 급여비용(1일당)



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, 시행규칙 제 22조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2조(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)에 의거,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. 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,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.
(※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: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)

▶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(2020. 1. 1. 기준)

가

재가급여

1) 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의 월 한도액

등급	월 한도액(원)
1등급	1,498,300
2등급	1,331,800
3등급	1,276,300
4등급	1,173,200
5등급	1,007,200
인지지원등급	566,600

2) 방문요양 급여비용(방문당)

분류	급여비용(원)
30분이상	14,530